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사례진술 :

원고는실업보험혜택에대한새로운클레임 (NIC)을유효하게제출했습니다. 그후,고용안전부(“Division”)는원고에게지불할주 간혜택이\$임을결정하고, 원고가설정한수혜기간동안원고에게지불할수있는실업보험혜택의최대금액은\$ 임을결정하였습니다.

이클레임은마지막취업에서의퇴직문제에대한판결에회부되었습니다.판결자는원고가혜택을받기에(실격이라는) (실격이아니라는)서류번호의판결자결정을내렸습니다. (원고) (고용주)는이결정에대한항소를제기하였으며,이문제는항소번호에따라항소심판에게제출되었습니다.다음과같은개인들이청문회에서항소심판앞에출석하였습니다. 일,항소심판은 N.C. Gen. Stat. § 96-14.()에따라원고가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실격이라는) (실격이아니라는) 결정을내렸습니다.(원고) (고용주)가항소하였습니다.

발견한사실 :

1. 원고는부터까지의기간동안지속적인클레임을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본부와함께 일신청을했으며,본부에서요청한대로취업사무실에보고를계속하고,N.C. Gen. Stat. § 96-15(a)에따라혜택클레임을신청하였습니다.
2. 일또는그즈음부터원고는고용주를위해일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녀는)일고용주를위해로서마지막으로일하였습니다.



3. 원고는에이업무로부터퇴직하였습니다.

법의규정:

고용안전법은다음과같이규정합니다:

(a) 업무와관련된불법행위로인해실업상태가된것으로본부가판단한개인은
혜택에실격처리된다.실격기간은불법행위가발생한후개인이클레임을제
출한첫주의첫날부터시작된다.

(b) 업무와관련된불법행위는다음중하나이다:

- (1) 고용주가직원에게기대할권리를가지고있거나구두또는서면으로직원
에게설명한행동기준을고의적으로위반하거나무시한것으로고용주의이
익에대한의도적이거나무자비한무시의행위
- (2) 고용주의이익이나고용인의의무또는고용주에대한의무에대한의도적
이고실질적인무시를나타내기위한수준의또는재발하는부주의또는과실
의행위

(c) 다음의예는개인이혜택을위한클레임을제기함으로써반박될수있는위법행위에대
한주된증거이다:

- (1) 고용주의서면알코올또는불법약물정책위반.
- (2) 알코올또는불법약물로인해심각한장애가있는보고.
- (3) 고용주구내에서의음주또는불법약물사용.
- (4) 고용주를위한근로자의근로또는합당한근로기준또는정책을위반한경우
G.S. 90-95(a)(1) 또는
G.S. 90-95(a)(2)에따라처벌될수있는규제물질을제조,판매,또는배포함에
따른관할법원의유죄판결.
- (5) 폭력,성범죄또는불법약물에관련된범죄가사용자의근로와관련또는
연관이있거나합당한업무규칙또는정책을위반하여체포또는유죄판결을
받은후고용이종료되거나정지된경우.
- (6) 상사,하급자,동료,납품업자,고객,또는일반대중을대상으로하는신체
적폭력을포함하여고용주의근로와관련된모든신체적폭력.
- (7) 적대적근무환경을조성하는연방정부보호특성과관련하여상사,부하
직원,동료,납품업자,고객또는일반대중에대한부적절한의견또는행동.
- (8) 고용과관련된절도.
- (9) 이전에제출한고용신청서를포함하여고용과관련된모든문서또는데이
터를단조또는위조.
- (10) 고용주의서면결근정책위반.
- (11) 근로자해고직전 12 개월동안합리적으로배정된업무를수행하거나고
용의무를적절하게수행하지못하는경우.



N.C. Gen.Stat. §96-14.6(c)
 는 11 가지 사례를 열거합니다. 제시된 증거가 원고가 그중 어느 하나에 연루되어 있음을 나타내면, 원고는 실업보험 혜택을 수령하는 것으로부터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가 “반박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원고가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고용주는 원고의 해고가 원고의 실업보험 혜택으로부터 실격될 만한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됩니다. Guilford Cty. v. Holmes, 102 N.C. App. 103, 401 S.E.2d 135 (1991).

본부가 개인이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퇴직한 거라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은 혜택을 수령하는 것으로부터 실격 처리됩니다. 개인이 퇴사할 때,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는 부담은 개인에게 있으며, 이 부담은 고용주에게 옮겨질 수 없습니다. N.C. Gen. Stat. 96-14.5(a). N.C. Gen. Stat. 96-14.5(a) 가 그것은 “개인이 직장을 떠날 때[,]” 적용 가능하며, 그 관련성은 개인이 직장을 그만둘 때만므로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떠나다”는 동사의 사용은 입법부가 퇴사에 대해 좁은 상황에 대해서만 법령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이 오로지 그의 장애 또는 건강 상태로 인해, 및 법령의 다른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위원회는 이 경우에 N.C. Gen. Stat. § 96-14.5(a)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이오와 대법원은 McCarthy v. Iowa Emp't Sec. Comm'n, 247 Iowa 760, 764, 76 N.W.2d 201, 204 (1956) 에서 이와 같은 법정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직장을 떠난 경우...” 라는 말은 ‘그가 실업 상태가 된 경우...’ 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해석만이 ‘자신의 과실 없이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위해’ 보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법안의 목적이라고 명시하는 [아이오와 고용 안전법] 에 일치한다.” (원본 강조). Accord, Cotright v. Doyal, La. Ct. App., 195 So.2d 176 (2nd Cir. 1967), Des Moines Indep. Cmty Sch. Dist. v. Dep't of Job Serv., 376 N.W.2d 605 (Iowa 1985), 및 Welch v. Iowa Dep't of Emp't Servs., 421 N.W.2d 150 (Iowa 1988).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총회는 고용 안전법이 제정되었고 고용 안전법에 따라 징수된 자금 이 “자신의 과실 없이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위해 사용될 것” 이라는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시민들의 공익과 일반 복지” 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N.C. Gen. Stat. § 96-2. 위원회는 입법부의 의도에 완전한 영향을 주기 위해, N.C. Gen. Stat. §96-14.5(a) 의 “개인이 직장을 떠난 경우...” 라는 말은 “개인이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 내립니다.

Applewhite v. Alliance One Int'l, Inc., 188 N.C.App. 271, 654 S.E.2d 764 (2008), 및 James v. Lemmons, 177 N.C.App. 509, 629 S.E.2d 324 (2006) 에서, 노스캐롤라이나 항소법원은 원고의 고용주 출결 정책 위반으로 이어진 마지막 사건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을 경우 (의료 조건으로 인해 결근을 하였을 때 고용주가 원고를 해고한 경우), “[원고]는 [고용주]의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통제를 할 수 없었음,” 및 “[원고]의 행위가 실질적인 잘못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다” 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실업보상에 대한 [원고의] 부분 실격은 적절하지 않다” 고 판결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판결이 Lindsey v. Qualex, Inc., 103 N.C.App. 585, 406 S.E.2d 609, disc. rev. denied, N.C. 196, 412 S.E.2d 57 (1991) 의 판결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고위당국 결정 번호
6 페이지 중 4

법의 결론 :



현재의 경우, 평가위원회는 제시된 적당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하는 사실의 발견을 통해 원고가 고용으로부터 해고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평가위원회는 더 나아가 이 사건의 사실에 통제판례법을 적용한 후, 원고가 고용주로부터 제시된 불법행위에 대한 일차적 증거에 대해 (성공적으로 반박하였다) (성공적으로 반박하는데에 실패하였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경우에서, 원고의 업무에 대한 부재는 원고가 통제할 수가 (없던) (부분적으로 있던) 의료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항소심판의 결정은 (확인되어야/ 뒤바뀌어야/ 수정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실업보험 혜택을 수령하기에 (실격이) (실격이 아니) 어야 합니다.

결정:

항소심판의 결정은 (확인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부터 실업보험 혜택에 대해 실격입니다.
(실격이 아니며 부터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평가위원회의 의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여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위원장

주의: 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팸플릿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팸플릿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 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5 페이지 중 5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 ("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6 페이지 중 6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